

97500 운동경기장 시설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절은 옥외공간에서 운동경기를 하기위하여 설치되는 운동경기장 또는 간이 운동경기장 시설 조성에 적용한다.
2. (시방작성자는 이절에 서술되지 않은 개개의 운동경기장 시설에 대한 시방사항이 필요할 경우 이절을 기본체계로 하여 수정 또는 추가로 발주시방을 작성하여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다목적운동장
2. 게이트볼장
3. 배드민턴장
4. 농구장
5. 배구장
6. 소프트볼장
7. 씨름장
8. 롤러스케이트장
9. 실외 수영장
10. 기타

1.2 관련 시방절(SECTION)

- 1.2.1 31100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 1.2.2 31200콘크리트의 운반, 치기 및 양생
- 1.2.3 31300 모르터 및 그라우트
- 1.2.4 95000 조경포장

1.3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해당사항은 발주시방에 따른다.)

1.3.2 건교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14장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1.3.3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설치 전문업체의 설치기준

1.4 제출물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하고 제출량 및 제출기한은 발주시방에 따른다.

1.4.1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s)

모든 시공상세도면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방작성자는 운동경기장 시설 시공시에 시공상세도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출받아야 하며 필요없는 경우 본항은 삭제한다. 시공상세도면 항목은 발주시방에 따른다.)

1.4.2 견본

수급인은 제출견본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견본의 항목 및 수량은 발주시방에 따른다.)

1.4.3 품질시험 성과표

(아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제품 또는 자재는 발주시방에 따른다.)

1. 반입될 제품 및 자재에 대해서는 KS표시 인증사본, 품질인증 승인서류 사본,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받은 형식승인서류 사본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또는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과표 또는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자체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제품자료

1. 『03210 시공상세도면, 재료공급원 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제출자료』 절의 "1.7 제품자료"에 따른다.
2. 수급인은 1항에 따라 제품 및 자재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항목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1.4.5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수급인은 시공전 이 절 "3부. 시공" 내용에 따라 시공상태 검측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자격

운동경기장 조성공사를 수행할 기술자는 이 분야에 숙련된 기술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 자격기준 및 경력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자격사항이 필요없을 경우 본항은 삭제한다.)

1.5.2 시험시공

수급인은 운동경기장 조성공사 전에 감리원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시험시공 항목, 시공량 및 횟수는 발주시방에 따르며 필요없을 경우 본항은 삭제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운동경기장 조성공사에 사용될 제품 및 자재중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 피해 등)을 받아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1.6.2 당해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1.6.3 특별한 저장이 요구되는 제품 및 재료는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1.7 시공환경 요구사항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시방에 따른다.)

1.8 작업의 연속성

수급인은 운동경기장 마감면 조성전에 경계재(경계석등) 또는 배수구조물의 양생 작업이 완료된 후에 당해작업을 시행한다.

1.9 타공종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운동경기장 공사전에 배수구조물 공사 등의 선행되어야 할 공종의 작업과 상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02410 협의와 조정』 절에 따라 사전에 협력조정하여야 한다.

2부. 자재

2.1 재료

2.1.1 운동경기장 마감면 재료

1. 보통토사 마감재: 『95510 흙다짐 포장』 절의 재료에 따른다.
2. 마사토 마감재: 『95520 마사토 포장』 절의 재료에 따른다.
3. 혼합토 마감재: 『95530 혼합토 포장』 절의 재료에 따른다.
4. 모래 마감재: 『95700 기타 포장』 절의 재료에 따른다.
5. 잔디 마감재: 『92100 잔디파종』 및 『92200 잔디식재』 절의 재료에 따른다.
6. 인조잔디 마감재: 『95610 인조잔디 포장』 절의 재료에 따른다.
7. 합성수지(우레탄) 마감재: 『95640 합성수지(우레탄)포장』 절의 재료에 따른다.
8.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 마감재: 『95310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의 재료에 따른다.
9. 투수 콘크리트 마감재: 『95320 투수 콘크리트 포장』 절의 재료에 따른다.
10. 콘크리트 및 모르터 마감재: 『31100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31200 콘크리트의 운반, 치기 및 양생』, 『31300 모르터 및 그라우트』 절의 재료에 따른다.
11. 칼라세라믹 마감재: 『95630 칼라세라믹 포장』 절의 재료에 따른다.
12. 기타마감재: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2.1.2 운동시설 기자재

골포스트, 농구대, 배구포스트, 그물네트, 백네트 등의 운동시설 기자재는 아래사항에 따른다.

1. 기성제품의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따른다.
2. 가공 및 제작해야 할 기자재의 경우 개별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이 없는 경우는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2.1.3 라인마킹재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2.2 조립

사용될 자재가 조립제품일 경우 조립에 대한 사항은 제조업자의 조립사양에 따른다.

2.3 마감

2.3.1 기성제품일 경우 마감에 관한 사항은 제조업자의 마감사양에 따른다.

2.3.2 가공 및 제작일 경우 마감에 관한 사항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2.4 자재 허용차

(자재에 대한 허용차 사항 있을 경우는 별도 발주시방에 따르며 없을 경우 본항은 삭제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수급인은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자재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5.2 대체자재 사용에 대한 사항은 『05310 재료 및 기기』에 따른다.

2.5.3 수급인은 공장에서 제작하는 시설물 또는 기자재의 경우 감리원의 요청이 있을때 공장제작에 대한 공장검수를 받아야 한다.

3부. 시공

3.1 시공기준

3.1.1 운동경기장 지하배수

『91700 지하배수』 절에 따른다.

3.1.2 운동 경기장 마감면 시공기준

1. 보통토사 마감: 『95510 흙다짐 포장』 절의 시공에 따른다.
2. 마사토마감: 『95520 마사토 포장』 절의 시공에 따른다.
3. 혼합토마감: 『95530 혼합토 포장』 절의 시공에 따른다.
4. 모래마감: 『95700 기타 포장』 절의 시공에 따른다.
5. 잔디마감: 『92100 잔디파종』 및 『92200 잔디식재』 절의 시공에 따른다.
6. 인조잔디마감: 『95610 인조잔디 포장』 절의 시공에 따른다.
7. 합성수지(우레탄)마감: 『95640 합성수지(우레탄)포장』 절의 시공에 따른다.
8.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마감: 『95310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의 시공에 따른다.
9. 투수 콘크리트마감: 『95320 투수 콘크리트 포장』 절의 시공에 따른다.
10. 콘크리트 및 모르터마감: 『31100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31200콘크리트의 운반, 치기 및 양생』, 『31300 모르터 및 그라우트』 절의 시공에 따른다

11. 칼라세라믹마감: 『95630 칼라세라믹 포장』 절의 시공에 따른다.

12. 기타마감: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3.1.3 운동시설기자재 설치시공

1. 기성제품일 경우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에 따라 시공한다.

2. 가공 및 제작설치의 경우 설치시공은 별도 발주설계도 및 발주시방에 따른다.

3.1.4 라인마킹 시공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감리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않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